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지난 1월 3일 개정·공포되어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단, 제7조 제2항은 공포일부터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시공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단,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5조 4항은 공포일부터 시행)은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은 1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 본지는 주요개정 내용을 게재하기로 한다.

■ 심사기준

① 입찰공고사항 구체적 명시 : 낙찰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 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입찰공고내용에 명시토록 했다.

② 입찰가격 현장공개 :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해 입찰참가자들의 불신을 해소토록 했다.

③ 수해복구공사 심사기한 단축 : 적격심사시 심사자료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4일 이내 심사토록 했다. 일반공사는 7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 이내의 기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공여유율 산정시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결산서(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하기로 했다.

■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자료 평가기준 조정 등 : 평가자료의 누락·오류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실적신고 등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시 업체의 책임으로 하고, 증명서 발급시 누락·오류·불명확

한 경우 관련 협회의 책임으로 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 평가시 관급·지급자재금액은 제외키로 했으며, 회원업체와 비회원업체간의 적격심사자료 적용기준을 통일시켰다.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구체화해 부채비율 100% 미만일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고 100% 이상일 경우 업종별 평균비율에 의거해 평가토록 했다. 3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도 간소화해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항목만 평가토록해 신규·소규모 업체의 낙찰기회를 확대했다.

② 공동도급시 신인도 평가방법 명확화 :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된 점수를 합산해 평가토록 했다.

③ 입찰금액 현장공포 : 가격입찰 이후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입찰금액을 발표하도록 했다.

④ 적격심사자료 제출서류 등 :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양수도 신고필 확인서 사본을 첨부토록 했다. 이때 분할·합병·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등기일(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업체는 당좌거래재개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⑤ 적격심사협의회 구성 근거 명시 : 자치단체별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5인 이상 포함시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⑥ 적격심사시 감점기준 구체화 :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사실 발생일로부터 100일 동안 당해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의 입찰에 대해 감점키로 했다. 이밖에 평가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토록 했다. 다만 경영상태 평가시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해 산정하고 입찰가격 평가시 입찰가격 산출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해 평가토록 했다.

⑦ 별지

△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평가시 관급·지급자재는 실적인정 범위에서 제외시켰다.(별지 1,3,5) 즉 추정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변경했다.

△ 최근 3년간의 적용기준은 업종별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를 최근 연도로 기산해 3년으로 했다.(별지3, 주1)

△ 합병, 분할 등의 경우 실질자본금 평가기준을 명시해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관련서류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도별 실질자본금을 제출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 평가토록 했다. 포괄승계 관련서류의 미제출 또는 권리·의무를 부분 승계한 경우는 합병·분할·양수 이전 업체의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토록 했다.

△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관련서류만 제출한 경우 승계자의 실질자본금은 분할 등 이전 승계자의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하고 인계자의 실질자본금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한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한 자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도별의 실질자본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질자본금은 0으로 계산한다.

△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개정,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5점을 부여하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만 평가해 각각 A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6점씩 12점을 부여키로 했다.

⑧ 별표

△ 업계 전체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년도 비율을 적용한다.(별표 1,6,7) 경영상태 평가시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별표 1, 주5)

△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실적으로 합산한 것으로 한다.

△ 분할후 권리·의무 승계법인은 분할부분의 실적을 합산하면 된다.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이전 당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탈퇴 등에 따른 실적인정은 구성원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 전체에 대해 하자보증서를 제출했으면 보증서 제출자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보증서 차수별로 구분해 제출한 경우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해준다.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에 의거 평가한다. 이 경우 새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0점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1999. 9. 1)</p> <p style="text-align: center;">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p> <p>1. 현행과 같음 - 다 음 - 가. 적용대상: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물품구매는 제외) 나. 기초금액의 작성 (1) 소속기관장의 보조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p> <p>(2)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시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초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상의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 한다)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p> <p>(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 입찰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 (2000. 1. 3)</p> <p style="text-align: center;">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p> <p>1. 생략 - 다 음 - 가. 적용대상: 공사·용역 및 물품 나. 기초금액 작성요령 (1)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 조서상에 그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 +3% 범위 내에서 7개, 0% ~ 3% 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기초금액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p> <p>기초금액을 공개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의 폭을 최대한 넓게하여 입찰공정성을 확보</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p> <p>(3)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4)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2.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 (1999. 9. 1)</p> <p style="text-align: center;">地方自治團體 適格審査基準</p> <p>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자결정시 이행능력 등의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6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예규는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되,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p> <p>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입찰집행에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자치부예규 제38호 (2000. 1. 3)</p> <p style="text-align: center;">地方自治團體 適格審査基準</p> <p>제1조(목적)</p> <p>.....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시의 이행능력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p> <p>제2조(입찰공고)</p> <p>.....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p>	<p>조문정리</p> <p>입찰공고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입찰참가자들의 편의도모</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p> <p>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p> <p>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p> <p><신설></p>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p> <p>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중 공</p>	<p>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 ----- ----- 경우에는 ----- ----- -----</p> <p>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집행 종료후 입찰 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 ----- ----- -----</p> <p>④ 제3항 규정에 의한 ----- ----- ----- -----</p> <p>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현행과 같음</p>	<p>조문정리</p> <p>가격입찰 결과를 신속히 공개토록 하여 입찰참가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이 가능토록하여 신속한 적격심사가 가능토록 함</p> <p>조문정리</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물품 및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용역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6조(세부심사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p> <p>제7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자치부예규 제27호 (1999. 9. 1)</p> <p>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p>	<p>제6조(세부심사기준): 현행과 같음</p> <p>제7조(심사방법): 현행과 같음</p> <p>② 보완일부터 7일 이내 (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 (2000. 1. 3)</p> <p>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p> <p>1조(목적) 행정자치부예규 제38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p>	<p>수해복구사업인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단축</p> <p>조문정리</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P.Q의 공사의 평가 기준: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3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4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p>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규격(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기술자 보유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심사 세부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시공경험,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가입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전산망 자료에 의하거나 관련협회에서 별도 통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에 의거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미신고,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관련협회 미가입 업체의 경우 평가자료는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까지 실적을 입찰공고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 총액과 시공능력공사액은 관련협회의 자료로만 평 	<p>제2조(평가기준) -----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경쟁입찰공사의 ----- 2. ----- 경쟁입찰공사의 ----- 3. ----- 경쟁입찰공사의 ----- 4. ----- 경쟁입찰공사의 ----- 5. ----- 경쟁입찰공사의 -----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의 평가자료는 (이하 "평가자료"라 한다) -----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각종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에 실적신고 내용에 대한 누락, 오류, 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은 당해업체가 져야하며, 당해업체가 정당한 실적신고를 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시 누락, 오류, 불명확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 총액과 	<p>조문정리</p> <p>조문정리</p> <p>협회 미가입업체의 경우에도 관련협회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평가자료의 확인·제출방법 개선</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가한다.</p> <p>3. 경영상태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 10에 의한다.</p> <p>4.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별첨양식4)에 의한다.</p> <p><신설></p> <p><신설></p> <p>5.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하되 부채비율에 한하여 당해업체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④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재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⑤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적용하며 취득점수가 가점등의 영향으로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2조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p> <p>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p>	<p>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의 평가자료로만 평가한다.</p> <p>3. 별표 12에 의한다.</p> <p>4. 시공경험 평가자료를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2 또는 3에 의한다.</p> <p>5. 제1호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조사·확정한 최종년도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만으로 평가한다.</p> <p>6. 제2호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의 기준연도에 관한 사항은 제5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p> <p>7. 추정가격 3억원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최근년도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업체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6」에 의한 부채비율 평가항목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다.</p> <p>8.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에 의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현행과 같음)</p> <p>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관급 및 지급자재 실적 관리 미흡으로 관급 및 지급자재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추정금액대로 평가하던 것을 추정가격 대비로 평가</p> <p>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p> <p>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로 영세·신규업체의 낙찰 기회 확대</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규모 또는 금액)에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p> <p>2.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대비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경영상태비율을 산정한 후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p> <p>3. 신인도의 평가는 별표 2 평가방법에 의한다.</p> <p>4.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합산자료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각 심사항목별 시공여유율 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p> <p>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 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에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대상 공사에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p> <p>나.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p>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에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p>	<p>2. (현행과 같음)</p> <p>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신인도의 평가는 「별표 2」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 산출하여 평가한다.</p> <p>가.</p> <p>..... 이 경우 평가 대상업종 및 평가대상 업종별 공사에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에 의한다.</p> <p>나. (현행과 같음)</p> <p>다.</p>	<p>공동수급체 신인도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p> <p>조문정리</p> <p>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에정금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함 *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 평가한다.</p> <p>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에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단, 소방공사는 공사에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②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분야의 취득점수에 합산공동도급비율만큼 가산 평가하되 상한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p> <p>.....</p> <p>.....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p> <p>라.</p> <p>.....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 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 시공능력공시액에</p> <p>.....</p> <p>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p> <p>바.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p> <p>사.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다"목 및 "라"목에 의한 공사에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p> <p>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p>	<p>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심사대상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토록 함</p> <p>소방공사도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곱하여 일반공사와 형평성 유지</p> <p>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받지 않는 공사금액 및 업종명시 -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p> <p>현행 ②항과 ④항 4호의 내용을 통합하여 조문 간소화</p>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주요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며 상한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p> <p>④ 공동수급체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와 지역공동도급에 따른 가산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u>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전문건설업부문만을 분담이행하는 전문건설업자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부문만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도 전문건설업자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한다. 4. 당해 공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p>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분야의 취득 점수에 합산시공비율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공동수급체구성원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이외의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삭제> 	<p>제1호의 내용과 중복 -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p> <p>②항에 통합하여 내용 반영</p>